

제207회 정례회

2002. 12. 23.

검 토 보 고 서

1.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2년 12월 21일
- 회부일자 : 2002년 12월 23일

3. 제안이유

- 대기·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시·도로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업무소관 실·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,
- 『충청북도 바이오산업추진단』의 행정자치부 승인에 따라 사업소의 명칭, 설치근거 및 소관사무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복지환경국장의 분장사무 중 “대기·수질·유독물 등의 환경시설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”을 신설
- 한시기구로 신설되는 『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추진단』의 사업소 명칭, 설치근거 및 소관사무 등을 명시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와 일부 공업지역 안의 사업장에 대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업무와 유독물 영업등록 등 환경 관리업무가 관련법령 (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,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,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)의 개정으로 환경부로부터 시·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전담인력에 대한 정원을 제204회 정례회에서 승인하면서 지적하였던 복지환경국 관련 분장사무를 신설하려는 것과

포스트 엑스포 대책 및 오송 생명과학단지 조성,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『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추진단』을 설치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기구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적된 건설종합본부의 명칭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여부와

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추진단의 세부 직제 편제계획, 추진단의 소관사무 중 제4호 생명과학단지 조성 및 지원시설 준공은 국가 공단임에도 추진단의 업무분장에 포함한 사유, 밀레니엄 타운조성공사의 사업계획 및 전망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